

5/21

총 무 처

인 사 2,110-1930 (72~8912) 1971. 7. 30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4, 5급공무원의 행정직에로의 전직시험요
구 절차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대통령령 제
5489호, 1971. 5. 28 공포 시행) 에 따른
4, 5급공무원의 행정직에로의 전직 시험에 대한
인사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
에 착오없이 바랍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5항 단서
규정 및 총무처예규 제47호 (1971. 6. 2) 인
사관계법령 개정요지 및 인사업무처리요령에서 이
통보한 바와 같이 종전에 2급 이상의 공무원들

문 서 번호	72-8-2	249240
인 원 번호	866A	8-3

110

인사 210 - 1930

1971. 7. 30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바로 실시할 수 있
던 4, 5급의 전직시험중 행정직에로의 전직 시험
은 일체 총무처장관이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앞으
로는 커부처 (청) 또는 소속 기관에서 전직 시험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4, 5급 공무원의 행정직에로의 전직시험
요구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 리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공무원 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하되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나.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기술서 1

부

다. 전직하고자 하는 사유서 1부

라. 전직시험요구서 응시자의 전직결과 행정

직의 급류별 정현원 대비표 / 부

따. 시령오주서 (사전 구매 첨부) . 끝

총 무 처 장 관

본건	71
사	
제1면	
제2면	
제3면	
제4면	
제5면	
제6면	
제7면	
제8면	
제9면	
제10면	
제11면	
제12면	
제13면	
제14면	
제15면	
제16면	
제17면	
제18면	
제19면	
제20면	
제21면	
제22면	
제23면	
제24면	
제25면	
제26면	
제27면	
제28면	
제29면	
제30면	
제31면	
제32면	
제33면	
제34면	
제35면	
제36면	
제37면	
제38면	
제39면	
제40면	
제41면	
제42면	
제43면	
제44면	
제45면	
제46면	
제47면	
제48면	
제49면	
제50면	
제51면	
제52면	
제53면	
제54면	
제55면	
제56면	
제57면	
제58면	
제59면	
제60면	
제61면	
제62면	
제63면	
제64면	
제65면	
제66면	
제67면	
제68면	
제69면	
제70면	
제71면	
제72면	
제73면	
제74면	
제75면	
제76면	
제77면	
제78면	
제79면	
제80면	
제81면	
제82면	
제83면	
제84면	
제85면	
제86면	
제87면	
제88면	
제89면	
제90면	
제91면	
제92면	
제93면	
제94면	
제95면	
제96면	
제97면	
제98면	
제99면	
제100면	

수신처: 가 (-1, -2, -6, -8, -11) 나 1.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31